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1654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	2214898	윤준병의원	'25.12.4.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6.3.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9.8.) 상정
	2217331	서삼석의원	'26.03.09.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6.4.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9.8.) 상정
	2219381	김용태의원	'26.06.19.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6.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9.8.) 상정

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9.8.)에

서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의 교육 여건 등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으나, 통신 및 보험 등 농어촌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부처와 지방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지역 의견의 정책 반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시설·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의 교육·학습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함(안 제10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과”를 “국무조정실장·기획예산처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
· 공간의 확보·활용 및 인력의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는 제1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u>국무조정실장</u>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30명</u> ----- -----. ④ ----- ----- -----. 1. ----- ----- ----- ----- ----- ----- ----- ----- ----- ----- ----- <u>국무조정실장</u> · <u>기획예산처장관</u> · <u>금융위원회위원장</u> · <u>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u> 과----- -----

2. (생 략) <u><신 설></u>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 ⑨ (생 략)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활용 및 인력의 지원
4. (생 략) ②·③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